

『재산영농조합법인』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

의 안 번 호	88
------------	----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읍자금 대출 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 중 '99.6.30현재 상환도래된 '99년도 상환대상 원리금의 일부를,
-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정부의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에 의거 농가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2년간 상환기간 연기코자 함에 있어,
- 본 농가부채대책자금은 연리5%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담보물건의 부족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 자금에 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신청이 있어,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「성장작목시범 단지조성사업」 읍자금 20억원을 '92.6.29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'92.7. 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'92.8.31일 읍자실행 하였음.
- 정부에서는 '98.11월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으로 농림업 중장기정책자금 중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,
 - '98.10.1~'99.12.31일 기간중 상환도래되는 원리금을 2년간 상환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,
 - 연기되는 원리금은 연리5%의 금리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.

-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'99.6.30일 기준 상환도래액 229,565천 원 중 99.6.27일 상환한 100,000천 원을 제외한 129,565천 원에 대하여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출」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코자 함에 있어,
- 본 농가부채대출은 연리5%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,
 -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.

3. 채무보증이 필요로 한 이유

가. 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

-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출」에 의해 지원되는 자금은 기존의 상환도래 원리금을 대환(돌려메우기)하는 절차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음

1). 채무보증액.

- 금차 대출금리와 당초 채무보증 금리가 동일함 \Rightarrow 5%
- 금차 대출액은 대환(돌려메우기)형식이므로 기존의 상환도래액을 대환조치하므로 보증액의 변동이 없음.

2). 보증기간

- 당초 채무보증한 기간내에서 '99상환도래액중 금회 채무보증신청한 129,565천 원에 대하여만 2년간 상환연기되므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변동이 없음.

나. 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① '99.6.30일 현재 상환도래액의 상환불가시 과정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불가

○ 7~9월(유예기간)

- 상환도래액 129,565천 원에 대하여 연17% 연체이자 부담(1일 60,350원)

○ 10월 이후

- 상환잔액 전액 1,591,685천 원에 대하여 연17% 연체이자 부담
(1일 741,330원)

○유예기간(9월까지)중 미상환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기타 운전자금 대출불가

- ②미수용시 연체이자 과증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경영난 악화
- ③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도산시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피하여 군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
- ④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함.

4. 관계법규 및 지침

가.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

나.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

다.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제5조

붙 임 : 1. 채무보증서(안) 1부.

2. 채무보증신청서 사본 1부.

채무보증서(안)

제 호

봉평농협장 귀하.

평창군수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
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 : 평창군 용평면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성조
2. 채무건명 :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 지원자금대출 채무보증
(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응자금중 '99.6.30일 현재 상환
도래액의 일부)
3. 채 무 액 : 일억이천구백오십육만오천원정 (₩129,565,000)
4. 이 자 율 : 년5%
5. 상환기간 : 1999년 9월 ~ 2001년 9월 (2년간)
6. 상환채원 : 유리온실 시설재배 및 법인운영 수익금
7. 담 보 : 성장작목시범단지 시설물(유리온실 4동/6,000평, 저온저장고
1동/200평) 및 농가부동산 - 기담보설정분
8. 응자재원 : 재정농업증기자금대출금
9. 관계기관 : 봉평농업협동조합(장평지소)
10. 채무보증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15조,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
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조례
11. 기타
12. 준수사항
 - 가. 채권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
하여야 합니다.
 - 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
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 - 다. 평창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

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 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마.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.

다만, 취득할 담보가 없을 시는 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읍자금 대출 시 '92.7.14일 군수의 채무보증 발급에 의한 대출실행후 저당권 설정한 물건에 의하여, 채권자는 이에 필요한 근저당권 추가 설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바. 집행기관과 채권자는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채무보증신청서

제 호

평창군수 귀하

재산영농조합법인

대표 김 성

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
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명 :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 지원자금대출 채무보증
(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 대환)

2. 내용

- 가. 채권자 : 봉평농협장(장평지소장)
- 나. 채무액 : 일억이천구백오십육만오천원정 (₩ 129,565,000)
- 다. 이자율 : 연5%
- 라. 상환기간 : 1999년 9월 ~ 2001년 9월 (2년간)
- 마. 상환계획 : 일시납(이자 1년후취)

3. 사유

- 가. 주채무발생 : '99.6.30일 현재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용자금 상환도래
원리금
- 나.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: 정부의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에 의거 농
가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'99.6.30일 현재 상
환도래된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용자금을
2년간 상환연기(대환)코자 하나 농림사업자신용
보증서발급 불가 및 담보물 부족
- 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: 지방재정법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21조 2항, 지방
자치법 제115조,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

라. 기타 참고사항

4. 준수사항

- 가. 주채무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
보고하여야 합니다.

- 나.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다. 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, 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 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라.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마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『재산영농조합법인』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제안설명서

I. 채무보증 경과 및 현황

1. 평창군의회 채무보증승인 _____ '92. 6. 29.
 2. 채무보증서 발급 _____ '92. 7. 14.
 3. 용자 실행 _____ '92. 8. 31
 4. 채무보증 사유

- ① UR대책 농업구조개선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피
 ② 농가당 용자금의 과다로 담보능력 부족(농가당 133백만원)

5. 채무보증 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보 증 액	상환(보증)기간	지 원 조 건
계	2,000,000		
유리온실	1,800,000	1992. 6~2012. 6	연리5%,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
저온저장고	200,000	1992. 6~2002. 6	연리5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
6. 그동안의 상환내역

(단위:천원)

거치기간 (93~95)	계 ('99.6.30현재)			'96년도			'97년도		
	계	원 금	이 자	계	원 금	이 자	계	원 금	이 자
249,580	802,243	408,314	393,929	234,800	134,520	100,280	231,011	134,480	96,531

계	'98년도			'99년도			상환잔액	비 고
	원 금	이 자	계	원 금	이 자	계		
236,432	134,440	101,992	100,000 (229,565)	4,875 (134,440)	95,125 (95,125)	1,591,685		

()속은 99년도 상환대상 금액

7. 재무구조 및 운영사항

(단위:천 원)

결산년월	총 자 산	자기자본	자 본 금	매 출 액	당기순수익
'96.12.31	2,909,699	117,628	159,642	991,309	40,457
'97.12.31	3,105,383	679,682	858,942	1,020,438	△114,456
'98.12.31	3,170,486	824,880	993,902	934,599	10,238

II. 채무보증신청 사유

-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시범사업으로써.
- '97년도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유가상승, 소비둔화, 원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으나 강력한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으로 '98년도에는 흑자경영을 하였고 '98년도까지는 채무보증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으나 '99년도에는 운전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,
- '99년도 상환도래액 229,565천원 중 100,000천원을 상환하고 잔액 129,565천원을 정부의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 자금을 지원받아 2년간 상환연기코자. 함에 있어,
 - 본 농가부채대책자금은 연리5%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,
 -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

III. 채무보증이 필요로 한 이유

가. 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① '99.6.30일 현재 상환도래액의 상환불가시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불가
- 7~9월(유예기간)
 - 상환도래액 129,565천원에 대하여 연17% 연체이자 부담(1일 60,350원)

○ 10월 이후

- 상환잔액 전액 1,591,686천원에 대하여 연17% 연체이자 부담
(1일 741,330원)

○ 유예기간(9월까지) 중 미상환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기타 운전자금 대출불가

- ② 미수용시 연체이자 과증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경영난 악화
- ③ 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도산시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피하여 군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
- ④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함.

가. 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

-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에 의해 지원되는 자금은 기존의 상환도래 원리금을 대환(돌려메우기)하는 절차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음

1). 채무보증액.

- 금차 대출금리와 당초 채무보증 금리가 동일함 ⇒ 5%
- 금차 대출액은 대환(돌려메우기)형식이므로 기존의 상환도래액을 대환조치하므로 보증액의 변동이 없음.

2). 보증기간

- 당초 채무보증한 기간내에서 '99상환도래액중 금회 채무보증신청한 129,565천원에 대하여만 2년간 상환연기되므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변동이 없음.